

의안번호	제 248 호
의 결	1993. 12. 23 .
년 월 일	(제28회기회회제2차본회의)

의 결 사 항
원안 가결

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안 자	보 은 군 수 (내 무 과)
제안 년월일	1993. 12. 16 .

【 제안사유 】

교사1리가 159세대로 비대하고 자연부락간 거리로 인해 행정추진효율이 떨어져
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 행정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
자 함

【 주요 토의과제 】 : 없음

【 주요 조정내용 】

현 교사1리를 교사1리(향교골, 사리골)와 교사4리(춘수골)로 분리

【 참고사항 】

현 행				조 정				비 고
행정리	면적	인구	호수	행정리	면적	인구	호수	
보은읍 교사1리	351필지	명	세대	보은읍	290필지	명	세대	향교골
	938,668㎡	577	159	교사1리	826,550㎡	314	78	사리골
				보은읍	61필지	명	세대	춘수골
				교사4리	112,118㎡	263	81	

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보은군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리장의 정원과 관할구역) 리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"별표와 같다"에서

별표중 보은읍의 동리별 정원을 "별지"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10월

읍 면	리 별	정 원	비 고
보 은 읍		4 8 명	
	삼 산 리	6	
	죽 전 리	2	
	장 신 리	2	
	교 사 리	4	
	수 정 리	1	
	지 산 리	2	
	금 굴 리	2	
	월 송 리	2	
	어 암 리	2	
	성 주 리	1	
	이 평 리	1	
	길 상 리	2	
	대 야 리	1	
	누 청 리	1	
	강 산 리	1	
	성 족 리	1	
	종 곡 리	1	
	학 림 리	2	
	강 신 리	2	
	중 동 리	1	
	신 함 리	2	
	풍 취 리	1	
	산 성 리	2	
	중 초 리	2	
	노 티 리	1	
	용 암 리	1	
	봉 평 리	1	
	장 속 리	1	

【 개정사유 】

개 정 사 유	비 고
○ 현 황 현 보은읍 교사1리는 주마을인 향교골과 춘수골이 산능선을 경계로 1km나 떨어져 있고 리의 규모가 156호가 됨 ○ 문제점 및 개정사유 교사1리의 주구성마을인 향교골과 춘수골이 산을 경계로하여 단위 자연부락으로 구획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춘수골에 동진 APT 신축입주로 거주세대가 81호에 이르고 있어 행정수행능력이 떨어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어 적정규모의 행정리로 분리하고자함	

신 구조 문 대 조 표

현				개			
읍 면	리 별	정 원	비 고	읍 면	리 별	정 원	비 고
보은읍		47		보은읍		48	
	삼 산	6			삼 산	6	
	죽 전	2			죽 전	2	
	장 신	2			장 신	2	
	교 사	3			교 사	4	
	수 정	1			수 정	1	
	지 산	2			지 산	2	
	금 굴	2			금 굴	2	
	월 송	2			월 송	2	
	어 암	2			어 암	2	
	성 주	1			성 주	1	
	이 평	1			이 평	1	
	길 상	2			길 상	2	
	대 야	1			대 야	1	
	누 청	1			누 청	1	
	강 산	1			강 산	1	
	성 족	1			성 족	1	
	종 곡	1			종 곡	1	
	학 림	2			학 림	2	
	강 신·동	2			강 신·동	2	
	중 신	1			중 신	1	
	합 취	2			합 취	2	
	풍	1			풍	1	

현행				개정			
읍면	리별	정원	비고	읍면	리별	정원	비고
	산성	2			산성	2	
	중초	2			중초	2	
	노티	1			노티	1	
	용암	1			용암	1	
	봉평	1			봉평	1	
	장속	1			장속	1	

리 정 원 현 황

읍 면	현 행	조 정	증 감	비 고
계	2 4 3	2 4 4	1	
보 은 읍	4 7	4 8	1	
내속리면	1 8	1 8		
외속리면	1 1	1 1		
마 로 · 면	2 1	2 1		
탄 부 면	1 9	1 9		
삼 승 면	2 2	2 2		
수 한 면	2 1	2 1		
회 남 면	1 5	1 5		
회 북 면	2 5	2 5		
내 북 면	2 1	2 1		
산 외 면	2 4	2 4		